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

■ 청렴윤리경영과 뇌물방지

2024 January

Vol. 133



반부패·뇌물방지 규제와 기업윤리
법무법인 세종 홍택균 변호사

뇌물방지 정책 우수 및 위반 사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

비즈니스 지역에 따른 부패방지 방안

부패라는 어둠에 대한 빛
'반부패의 세계사'



COVER STORY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영역 중 하나는 '뇌물방지'이다. 국내 형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서는 '뇌물'을 공직자, 또는 유관자, 제3자에 대해 대가성이거나 직무와 유관하게 부당한 이익을 공여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OECD, ICC(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의 글로벌 지침에 따르면, 민간영역 간 이루어지는 직무와 유관하거나 대가성의 부당한 이익의 교환 역시 뇌물로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 뇌물방지 이니셔티브 발표 등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업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뇌물'을 상업적 뇌물 수수 영역까지로 정의하여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뇌물행위 방지를 돕는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반부패·뇌물방지 규제와 기업윤리 법무법인 세종 홍탁균 변호사	
02	사례돌보기	06
	뇌물방지 정책 우수 및 위반 사례	
03	보고서리뷰	13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 OECD(202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7
	비즈니스 지역에 따른 부패방지 방안	
05	문화 속 기업윤리	21
	부패라는 어둠에 대한 빛 ‘반부패의 세계사’	
06	뉴스클립	2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컷	25
	선물과 뇌물의 구분	
08	행사소식	26
09	퀴즈	27



전문가 코칭

반부패·뇌물방지 규제와 기업윤리

홍탁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이번 호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뇌물과 기업윤리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국내외 반부패 규범 중 국내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기업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내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뇌물을 규제하는 형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산업별 법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약 분야의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의료법, 약사법, 금융산업 분야의 이익제공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건설 분야의 이익제공을 규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여 소속 임직원의 반부패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할 의무 등이 있는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관련 법률입니다.

해외의 법으로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영국의 부패방지법(UK Bribery Act)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나 IT 기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프로젝트가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반부패규정 위반 등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여 제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부패행위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적용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회원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의 ‘부패방지협약’ 등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ESG경영에서 S(Social)의 한 요소로 반부패경영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2> 기업들은 반부패 규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기업이 벌금 등의 제재를 받거나 관련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공공입찰과 관련되어 있다면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 평판에 타격을 입거나, 향후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할 때 부패행위 전력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려워지거나 수많은 점검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조사기관으로부터 FCPA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제재금액이 매우 큽니다.

기업들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평소에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인력 확보와 내부규정 제정, 내부규정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 영업부서, 대관 부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반부패의무 준수여부 점검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세계은행 등은 기업이 평소에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충실히 운영하였다면 제재수준을 대폭 감경하는 명시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반부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눈앞의 매출을 포기하거나, 경쟁사에게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돌보기

뇌물방지 정책 우수 및 위반 사례



작년 12월 미국 법무부는 뇌물 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고 전 세계 기관과의 협력하기 위해 국제 기업 뇌물 수수 방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반부패 역량 및 권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ECCTA,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법안이 2023년 10월 26일 왕실의 승인을 받아 작년 12월 26일부터 주요 조항이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사기퇴치, 부패방지, 합법적인 사업활동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기업의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기업이 합리적인 사기예방 절차를 제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자가 기업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업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새로운 형사 범죄 ‘사기예방실패범죄(offence of a failure to prevent fraud)’를 도입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반부패 및 뇌물 사건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한편, ESG 규제 및 공시 프레임워크 증가로 기업은 규정을 준수하여 국내외 사법리스크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사례돌보기에서는 기업이 반부패 관리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해외뇌물방지법(FCPA)을 위반한 기업 사례와 위반 기업이 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nwha Aerospace)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 방산 기업으로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과 금품, 뇌물 수수, 리베이트 방지 등 반부패 분야 사내 시스템을 평가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국지배구조원의(KCGC) 2023년 ESG등급평가에서도 A(우수)등급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중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ESG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중중대성 평가를 통해 주요 5가지 이슈를 도출했는데 그 중 하나는 '비즈니스 윤리 및 준법경영을 강화'이다. 방위산업은 군사 기밀·기술유출 등 방산비리 부패범죄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이면서 그 파급효과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반부패 관련 인증 취득 이외에도 합병 후 반부패 윤리 규범들의 재편과 임직원 및 협력사로의 전파,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편된 반부패 관련 윤리규범 중 임직원 행동규범은 '한화인의 기준(H-Standard)'이라는 부제로 임직원으로서 나, 회사, 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2번, 6번 조항에서는 뇌물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동규범(Code of Conduct) – 한화인의 기준(H-Standard)〉

나	1. 한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합니다.
	2.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법규와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보편적 양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 모든 정보는 정확·정직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법규의 위반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를 위하여', '고객을 위하여', '상사의 명을 받아' 한 경우에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법규의 위반에 대한 보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3.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별, 강제노동,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4. 우리의 안전을 위한 환경·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 회사의 비용, 유무형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등 회사 정보를 보호합니다.
	6.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또는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접대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임직원 사이에서도 금품·향응·접대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 거래관계, 고용, 평가 등에 있어 사적 관계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미공개 정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증권·투자상품 거래 등에 활용하여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리활동에 참여하거나 겸업(이중취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7.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믿음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8.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거래하며, 사업파트너와의 상생을 통해 동반자로서 상호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규범과 약속을 존중하며 업무수행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10.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출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행동규범 행동규범(Code of Conduct) (2023.1)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급망 관리 및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측면에서도 협력사와 청렴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렴서약서'를 체결하는 등 임직원 및 협력사가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렴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에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가 협조할 사항을 규정하며, 받지 말아야 할 뇌물, 청탁 등의 구체적 예시를 함께 명시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직원은 거래선 혹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에게)

*거래선: 구매 및 영업 거래선, 공사·공무, 외주, 개발용역 업체 등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사 및 협력회사

1.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 등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습니다.

- 금전: 현금, 수표,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등
- 현금성 자산: 백화점상품권, 항공권, 회원권, 문화상품권, 공연티켓, 놀이시설 이용권,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등
- 선물: 자동차, 귀금속, 명절선물 등
- ※ 이 외에도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 주식, 채권을 무상 또는 저가매입
- 거래선의 자산(차량 등) 및 제품 등을 저가매입

2. 과도한 식사, 골프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 과도한 식사: 일식당,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의 식사
- 술접대: 유흥업소 등에서의 접대

3.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4. 금전적,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금전적·물적 피해: 협찬요구, 회식비용 전가, 거래선 차량 무상사용 등
- 부당한 청탁: 주택 등의 임대차 강요, 지인 채용 요구 등

5.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혜: 고가구매, 저가판매, 입찰정보 유출, 견적조작, 들러리견적, 자격미달 거래업체 등록,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등

6. 업무상 관련이 있는 비상장 거래선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7. 당사의 유·무형 정보자산이나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 정보자산: 영업기밀, 입찰정보, 기술개발 정보, 소프트웨어, 고객 및 임직원의 신상정보 등

8. 당사의 인력이 경쟁사에 스카웃 되도록 주도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 ※ 내부 조직현황 및 직원의 인사정보 제공도 포함

9. 기타 청결한 조직문화 유지·계승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 및 회사의 이미지 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즈니스가이드라인

2. 3M

3M은 사무용품, 의료용품, 보안제품 등을 제조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3M의 해외 자회사인 3M China가 중국 정부 공무원에게 여행 특전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한 혐의로 총 4,581,618달러에 달하는 판결 전 이자와 2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SEC는 3M과 그 자회사를 FCPA의 장부 및 기록 및 내부 통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혐의로는 합법적인 사업 비용의 부적절한 기록과 국경 간 자금 이체를 위한 내부 회계 통제의 부적절한 유지 관리가 포함된다.

SEC에 따르면 3M Chin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투어, 쇼핑 방문, 당일 여행, 및 기타 레저 활동을 포함한 해외 여행을 제공했으며, 국영 의료 시설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3M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되었다. 3M China는 적게는 24회의 여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 가량을 지불하였으며, 2016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54,000달러를 중국 여행사에 직접 송금해 부적절한 관광 활동 비용을 충당했다. 또한 중국 정부 공무원이 여행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조작하고 중국 여행사와 공모하여 관광활동으로 구성된 대체 일정을 구성하였다.

3M은 2018년 일부 직원이 회사의 윤리 정책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회사는 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3M은 이러한 규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위법 행위에 연루된 직원을 징계 및 해고했으며, 해당 중국 여행사와 거래를 종료했다. 내부 통제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시정 조치도 이루어졌다. 또한 3M은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3M은 관련자들과 함께 이러한 회사 정책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9년 개정된 3M의 내부 통제, 재무 보고와 관련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M의 내부통제, 재무 보고, 문서 보존 및 감사 원칙-내부통제 조항〉

정책	조항
내부통제	- 모든 사업상 거래, 기업 자산 및 자금, 책임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성이 있는 기록과 설명을 입력 및 유지하십시오. - 직원이 상사에게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업 목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관련 문서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하십시오

내부통제	- 지출을 승인 권한이 있는 직원은 해당 지출이 기업 방침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후에 승인해야 하며 승인 권한을 진지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직원은 상황에 따라 권한을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위임된 권한의 사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직원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에는 명확한 지시 및 지속적인 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공개 통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중요한 정보를 기록, 처리, 요약하여 세인트폴(St.Paul)에 있는 회계 또는 감사 부서의 적절한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3M의 사업과 관련된 발전,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 모든 물리적, 재무 관련, 정보 관련 기타 회사 자산을 모두 보호하십시오. - 3M에 혜택이 발생한 경우의 비용에 대해서만 상환을 요구하십시오. - 평가 및 승인 절차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재무보고	- 내부 보고서와 증권거래위원회, 기타 정부 기관 또는 자율 규제 기관에 제출된 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재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세요. - 필요에 따라 발생주의¹⁾를 사용하여 적절한 회계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 불법,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3M의 자금이나 재산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는 재무 보고는 피하십시오. - 과장 보고된 출장비 및 생활비 보고 또는 잘못된 시간 기록이나 청구서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재무 기록은 절대 제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항상 3M의 매출 인식 요건(Revenue Recognition Requirements)을 따르십시오. - 절대로 지출의 목적을 실제와 다르게 기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출처: 3M Code of Conduct – Internal Controls, Financial Reporting, Document Retention, and Auditing Principle(2019.2.4)

또한 3M은 글로벌 윤리강령 핸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해외지사 및 협력사에까지 공유한다. 윤리강령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교류, 정부와 협력, 영업 및 마케팅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직원 행동지침 및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해당 강령과 연관된 판단 기준, 상황별 예시, 퀴즈 등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 기업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

〈3M의 글로벌 윤리강령 - 판단 기준 예시〉

아래의 비즈니스 예의 목록을 보고 3M 정책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해당 항목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일반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를 겸한 점심 식사



적절함

모임에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적정 가격의 점심을 제공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과일과 치즈가 담긴 바구니를 매월 제공



적절하지 않음

이러한 선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은 3M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아들에게 iPad 선물



적절하지 않음

이 선물은 값이 너무 비싸며 비즈니스 파트너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M 로고가 있는 셔츠



적절함

이것은 3M 브랜드가 찍힌 적정 가격의 물품이며, 대체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공하기에 적합합니다. 공무원 및 의료 전문가(HCP)와의 비즈니스 예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 및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출처: 3M 글로벌 윤리강령

참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행동규범 행동규범(Code of Conduct)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즈니스가이드라인
https://www.hasrm.com/nexacro17/html/business_guide.html
- 3M Code of Conduct-Internal Controls, Financial Reporting, Document Retention, and Auditing Principle(2019.2.4)
- 3M 글로벌 윤리강령
<https://multimedia.3m.com/mws/media/15934780/3m-global-code-of-conduct-print-version-kr.pdf>
- 국회법률도서관
https://law.nanet.go.kr/foreignlaw/latestdecree/latestdecreeView.do?cn=PLAW2023000280&pageNo=4&pageSize=10&jsFunctionNm=search&searchType=0&searchSelVal=10&searchGubun=LATESTDECREE&countPerPage=10&displaySort=REG_DATE_DESC&searchKey=&searchCon=ALL&NEXT_COMMIT_CODE_SP=&NATION_CODE_WS=&dateGubun=&searchFromDate=&searchToDate=&flag=current&searchTab=ALL&searchAction=0&displayAction=0
- 영국 정부 홈페이지 뉴스레터, "Robust new laws to fight corruption, money laundering and fraud" (2023.10.6)
<https://www.gov.uk/government/news/robust-new-laws-to-fight-corruption-money-laundering-and-fraud>
- Compliance week, "DOJ announces international anti-bribery initiative"(2023.12.1)
<https://www.complianceweek.com/regulatory-enforcement/doj-announces-international-anti-bribery-initiative/33959.article>



보고서리뷰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

■ 보고서: OECD(202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가 사람, 지구, 사회와 관련되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1976년에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2011년의 개정 이후 10년 만인 2023년 6월 8일에 그 간의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재개정됐다.

2023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기후변화,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목표 준수를 위한 권고사항, 데이터 윤리와 기술 사용에 대한 실사와 같이 경영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권고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업활동의 영향과 비즈니스에 대한 실사, 내외부고발자 보호 강화, 정보공개, 부패 실사, OECD 책임경영 기업책임경영(RBC) 국내연락사무소의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²⁾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다국적기업 활동의 모범관행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닌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대되는 기업활동 기준의 제시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대응하려는 기업이라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개정 사항 중에서도 뇌물, 반부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수탁국은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for RBC)'를 설치한다. 이 기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촉진하고 이행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며, 정책개발, 정부활동 지원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사항〉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포함하여 기술의 개발, 자금조달, 판매, 라이선스, 거래 및 사용에 대한 실사 기대수준의 포함
-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영향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한 보호 강화
- 기업책임경영(RBC) 정보 공개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사항
-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실사 권고 사항 확대
- 기업의 로비활동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 기업책임경영(RBC) 국내연락사무소의 가시성, 효과성 및 기능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강화

출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개정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권고 사항 외에도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기술 및 혁신, 경쟁, 조세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여러 쟁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 조치를 이행하면 다른 부정적 영향 방지도 도움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뇌물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업의 준수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1 (부정부패 금지)	- (부정부패 행위 관여 금지) 공무원,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시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등 부정부패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부당이익 요구·수령 금지) 기업은 공무원이나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수령하는 데 동의해서는 안 된다. - (제3의 중개자를 통한 부당이익 대리 수수 및 공여 금지) 전달기업은 공무원,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전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대리인, 컨설턴트, 대표자, 유통업체, 협회, 계약업체, 공급업체, 합작투자 파트너 등 기타 중개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	- (도입) 기업의 개별적 상황, 특히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 요소(기업이 운영되는 지역 및 산업 부문, 기타 기업책임경영 문제, 규제 환경, 사업적 관계의 종류, 해외 정부와의 거래, 제3자의 사용 등)를 고려하여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행위의 적절한 예방, 감지, 대응을 위해 위험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된 적절한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수립 및 채택한다. - (구성 및 운영)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에는 회계장부, 이해 충돌 목록 (conflict of interest registers), 기록, 계정을 뇌물 또는 기타 부정부패 행위나 그 은폐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재무 및 회계 절차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준수 관련 자원의 할당을 결정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기업이 뇌물 또는 기타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과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재평가해야 한다. - (위험기반 실사) 부정부패 예방 및 탐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는 위험기반 실사³⁾를 포함해야 한다.
3 (급행료)	- (급행료 자제와 기록) 사내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통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빠른 일처리를 위한 소액의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는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며, 이러한 급행료가 지급될 경우 이를 장부 및 재무 기록에 정확히 반영한다.

3)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 또는 완화하고, 이러한 영향을 다룬 방법을 보고하기 위해 기업 위험 관리 체계에 실사를 포함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특수한 상황 등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책 (remediation)을 제시하거나 구제를 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처리한다.

4 (제3자 관리)	- (실사 및 감독)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특정 위험을 고려하여 고용 관련 실사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대리인을 정기적으로 적절히 감독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에 한하여 대리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기업은 대리인이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피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당국에 정보제공)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 관련된 대리인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목록을 관련 정보공개 요건에 따라 관련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통 및 투명성 강화)	- (청렴문화 조성)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직한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i)기업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관리 기구 및 경영진의 강력하고 명시적이며 가시적인 지원과 약속, (ii)모든 직원과 관련 제3자(해외 자회사, 대리인, 기타 중개인 등)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명확하게 작성된 가시적인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금지 정책, (iii)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채택한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의 공개가 포함될 수 있다.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업은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협력을 제고하도록 대중과의 대화와 개방성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은 뇌물·부정부패 관련 위반사항 및 의심 사례에 대한 조치를 국내법 및 국내 요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위반사항의 식별, 조사, 보고 절차와 법 집행 당국과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프로그램 및 조치 인식제고)	- 뇌물과 기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기업의 정책과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 대한 직원(또는 사업적 관계로 연결된 개인/사업장)의 인식을 높이고 준수를 촉진하도록 관련 정책, 프로그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보급하고, 언어, 문화, 기술적 장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도입한다.
7 (정치적 활동)	- (불법적 후원 및 강요 금지) 공직 후보나 정당, 또는 정당이나 정치 후보와 관련된 기타 단체를 불법적으로 후원하지 않는다. 정치적 후원은 정보공개 요건을 비롯한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에게 정치 후보나 정치 단체의 지지를 강요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참고

- 법률신문, "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2023.10.)
-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홈페이지 | <http://www.ncp.or.kr/jsp/kncp/kor/main/main.jsp#>
-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국문)



행동하는
윤리경영

비즈니스 지역에 따른 부패방지 방안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발간한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 보고서는 중국과 주변 실크로드 지역의 반부패 규범 등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경영에 청렴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해 비즈니스 무결성 및 규정 준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뇌물 수수가 여러 국가에서 불법이고 범죄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합법적 활동과 불법적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기업은 뇌물 수수 금지에 관한 일반 조항 외에도 특정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UNODC 보고서의 정보를 발췌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상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규범반영-지역기구 별 부패 방지 협약

글로벌 기구, EU 외에도 다양한 지역 기구에서도 부패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지역기구 내의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때문에 기업은 국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다 적용가능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기 때문에 기업은 프로젝트와 연관된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비즈니스의 청렴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UNODC 보고서에서는 UN 부패 방지 협약에서 제시하는 부패 유형을 기준으로 지역적 협약들에서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류한다.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연에서 범죄로 규정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타 지역의 규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UN협약과 일부 지역 협약에서 정의된 범죄 비교〉

UN 부패 방지 협약	미주 간 협약	아프리카 연합 협약	아라비아 협약
국가공무원 뇌물 수수	V	V	V
외국 공무원 및 공공 국제기구 공직자에 대한 뇌물 수수	V		V
횡령, 유용 또는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재산 유용	V	V	V
영향력 행사(Trading in influence)		V	V
직권 남용(Abuse of functions)	V	V	V
불법 축재(Illicit enrichment)	V	V	V
민간 부문에서의 뇌물 수수		V	V
민간 부문의 재산 횡령			V
범죄 수익 세탁		V	V
은폐	V	V	V
공무 집행 방해			V

출처: UNODC,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2023)

2 위험기반-고위험 영역 뇌물방지

부패위험이 높은 부분은 지출 유형은 대리인 및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커미션, 기부 및 후원, 급행료 등이 있다. 다양한 유형의 지출이 뇌물을 위장하기 위해 오용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지출을 주의해야 한다.

- 선물, 접대, 여행 및 접대
- 종업원 및 제3자에 대한 현금
- 자선 및 정치 기부금 및 후원

이러한 지출이 불법이나 뇌물 수수료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참고해 볼 수 있다.

〈부패 위험이 높은 지출 유형의 지출 검토 및 승인 정책을 위한 CHECK LIST〉

- 현지 법률에 따라 그러한 지출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 지출 의도는 무엇입니까?	
- 지출 금액이 현지 법률, 관습, 사업체 내부 지침에 부합합니까?	
- 지급금을 받는 사람(수령인)은 누구입니까?	
- 실제 사용처와 최종 수령인이 결제 승인 및 지급 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합니까?	
- 해당 결제가 계약 및 초기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 업계에서 지출을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 의료 분야의 선물 및 접대에 대한 특별 규정이 명시적으로 제공됩니까?)	

출처: UNODC,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2023)

지출 외의 또 다른 고위험 영역의 문제로는 이해상충과 청탁이나 뇌물 권유가 있으며, 이러한 부패에 대해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속한 법적 대응과 불필요한 법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된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기업의 법적 의무와 글로벌 부패방지 이니셔티브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2023.12.11)'는 각 기업이 다음의 네 가지를 효과적인 기업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로 제시한다.

- (i) ICC의 규정 및 관련 법률 반영
- (ii)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면한 위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결과 기반
- (iii)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른 조정
- (iv) 프로그램 목적 설정: 반부패 및 기업 내 청렴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 문화 촉진

출처: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

이를 참고했을 때 기업은 각 지역별 규범 분석, 위험 영역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부패방지 목적에 맞도록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2023)
- UNODC,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2023)



문화 속
기업윤리

부패라는 어둠에 대한 빛, 도서 ‘반부패의 세계사’



*이미지출처 에스24

1970년대 후반 미국의 군수업체가 각국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은 건넸던 록히드 사건,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의 확대에 반대를 표명한 야당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권력남용을 한 사건은 대표적 부패사건으로 회자된다.

이는 부패가 뇌물이나 횡령과 같은 물질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 외에도 심각한 윤리, 도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임된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부패를 정의하고 있지만, 부패는 단지 법을 위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일체를 아우른다.

즉, 반부패 활동은 부패한 개인을 처벌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명백한 범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나쁜 관행을 뿌리뽑고 새로운 도덕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부패 행위를 완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권력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사(audit), 옴부즈만(ombudsman), 회계감사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두기 마련이다. 또 반대로 부패는 대부분 내부통제와 감시만으로 견제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제도(알권리), 내부고발(알릴 의무), 언론의 자유(알아낼 자유)가 역사적으로 함께 발전해온 이유이다. 도서에서는 각 제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시대적 배경 하에 작동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의미를 분석한다.

18세기 영국에서 부패는 목을 쳐도 다시 새로운 목이 자라나는 고대 그리스신화의 괴물인 히드라에 비유되었다고 한다. 부패가 아무리 처벌해도 사라지지 않고 매우 질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활동은 제도적 개선과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이 함께 가야 함을 도서에서는 강조한다.

역사적 사건들의 교훈에서처럼 무엇이 잘못되었고, 피해가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패가 덜 발생하고, 설령 발생한다 해도 대처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023년 12월 28일 발표했다.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2월 28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58687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 5억 원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2월 20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58687

국내외 동향

금융위,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사항, 주식 소각 등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 발생 시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3년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고, 유관기관들도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왔다. 거래소는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시스템 개선과 함께 2024년부터 기업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상장사 영문공시가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SBS BIZ 2023년 12월 11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8829?division=NAVER>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 'ESG 상위 10%' 한국 기업 22곳 선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글로벌 상위 10% 기업'을 뜻하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국내 기업 22곳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과 에쓰오일, 현대건설은 14년 연속 선정됐다. DJSI는 글로벌 금융정보업체인 S&P글로벌이 세계 주요 기업의 경제적·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1999년 부터 매년 ESG이슈의 중요성과 평가 필요성을 고려하는 ESG지수로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DJSI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윤리경영 △기후변화 대응 △인적자본 개발 △제품 책임 등 공통 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택소노미(Taxonomy·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분류체계) △중대성 평가 △리스크 및 위기 관리 △공급망 관리 △생물다양성 등의 평가 항목이 대폭 개정됐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DJSI 월드지수에선 32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국내 기업은 22곳이다. 이번 DJSI 평가 결과는 오는 18일 미국 증권거래시장 개장 시점에 S&P DJSI 펀드 및 관련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수 펀드에 반영될 예정이다.

■ 한국경제 2023년 12월 10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062961>

美 "美기업·미국인에 뇌물 받은 외국정부 관리도美서 처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까지 미국에서 처벌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해외강탈방지법(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주는 금품을 수수한 외국 정부 관리들을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조항에 포함된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 미국이 폭넓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도 미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벌해왔으나 미국 사법당국은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 법률에 따라 피소되는 외국 관리의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 있거나,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 입국할 경우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 로펌 스콧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의 파트너 톰 파이어스톤(Tom Firestone)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뇌물 제공의 공급 측면만 다루는 반면 이법안은 수요 측면을 다룬다"라고 지적했으며 "이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해 그들이 이런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WSJ) 2024년 1월 2일

<https://www.wsj.com/articles/u-s-prosecutors-can-charge-foreign-officials-with-bribery-under-new-provision-ec3a4dfc>

■ 연합뉴스 2024년 1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001000072?input=1195mS>

EU, 기업규제 강화 ... 공급망실사법 확정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023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지침은 기업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문제 발생시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인권분야에서는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사항도 다뤄진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대상은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되, EU 기업의 경우 직원수가 5백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이 포함된다. 또, 유럽연합 내에서 3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린 비EU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유럽연합에 직접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지침 위반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도 가능하다고 이사회는 설명했다.

■ 한국경제 2023년 12월 14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474Y>



웹툰

선물과 뇌물의 구분

윤리네컷





행사소식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온라인 포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ESG경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ESG경영이 의무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린워싱 리스크, ESG 공시 인증과 그린워싱, 글로벌 ESG인증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화우

일정 2024년 2월 5일(월)

장소 온라인 생중계

참고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KcciNewsDetail.asp?DA_TA_ID=20240116132505532658K000&CHAM_CD=B001&BIZ_SEQ=000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 ESRS 이행 가이드선스 강독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이중 중요성 적용 확대를 고려하고 가치사슬이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긍정적 영향 관리에 대한 정보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 ESRS 이행 가이드선스(이중 중요성, 가치사슬, ESRS 데이터포인트) 강독' 를 주제로 ESG 사안 관리와 이중 중요성 적용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는 세미나

주최 지평 ESG 아카데미

일정 2024년 2월 2일(금)

장소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참고 <https://www.jipyong.com/event/240202/index.html>



안내

2024년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교육담당자 이메일(ksj1017@korea.kr)**로 '24. 2. 29.(목)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기업은 유선 통보(3월 중)이며,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육담당자(☎043-901-6153, 김수진 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 윤리의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 교육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2024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1. 운영 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1월
※ (방문)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 (합동) 수요조사 후 2회 실시 예정
2. 개설 과정
 - (1)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1시간30분 ~ 2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 운영방식 :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상 전체 교육인원 수용 곤란 시 온라인교육 병행 가능
 - (2)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맞춤형 합동교육」
 - 교육대상 : 민간기업 윤리·준법경영, 감사 등 업무 담당자
 - 교육시간 : 1일 4시간 / 청렴연수원(청주시 소재) 또는 수요기업 소재지 대강당
 - ※ 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일시와 장소를 결정한 후 추가 수요조사 실시 예정
3.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의 의의,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공연 방식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퀴즈

Q. 다음 중 거래처 직원과의 거래에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래처 차량 무상사용
- ② 고급식당에서의 생일 저녁식사
- ③ 부서 회식비 대납
- ④ 재입찰에 따른 사업계약

퀴즈 응모 2024년 2월 9일(화)까지

- (1) '응모하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희님, 나○승님, 임○범님, 정○균님, 임○희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